

제336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8월18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사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현재·이만우·김동완·고희선·전해철·정희수·박인숙·홍문표·유승민 의원 발의)(계속) 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조정식·이개호·주승용·박홍근·황주홍·심윤조·부좌현·박남춘·정청래·민홍철·강동원·김우남·유승희 의원 발의) 3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김세연·안홍준·유기준·이현승·여상규·노철래·전하진·신성범·유재중·박인숙·유일호·주영순·김종훈·윤명희·김도읍·정의화·서용교·나성린·류지영·김정훈·김현숙·이재균·김재경·정갑윤·이채익·이현재·고희선·이진복·김성찬·현영희·박대출 의원 발의)(계속) 3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배기운·김춘진·민홍철·전순옥·남인순·이찬열·배재정·김관영·강기정·박홍근·안규백·윤관석·유기홍·유은혜·신경민·최규성·김태년·한정애·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24)(계속) 3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윤덕·백재현·박수현·이개호·정진후·정호준·김기준·우원식·유은혜·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91) 3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양승조·유승희·박남춘·김윤덕·김광진·박수현·임내현·김태년·신기남·이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59) 3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강기정·김윤덕·김기식·백재현·최재성·박광온·배재정·박영선·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65) 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배기운·김춘진·민홍철·전순옥·남인순·이찬열·배재정·김관영·강기정·박홍근·안규백·윤관석·유기홍·김태년·유은혜·신경민·최규성·한정애·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51)(계속) 3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안민석·심재권·김현미·홍종학·오제세·최민희·박광온·김성곤·이찬열·이종걸·부좌현·배재정·이개호·한명숙·최동익·서기호·추미애·도종환·유기홍·박민수·박남춘·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3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심윤조·김종대·류지영·송영근·이진복·이이재·서용교·김성곤·김동완·이학재·한선교·정병국·김광림·정수성·이주영·이한성·김태환 의원 발의) 3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서청원·이재오·김춘진·진선미·정청래·문정림·김을동·정갑윤·강석호·정병국·홍문표 의원 발의) 4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강동원·김경협·배재정·설훈·신경민·안규백·오영식·이찬열·이학영·최동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16) 4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민기·이윤석·한명숙·박지원·주승용·우원식·김성곤·임내현·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4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장하나·이에리사·정성호·유인태·홍종학·문병호·김성주·김광진·김민기·신경민·유성엽·윤후덕·강동원·전정희·김재윤·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4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양승조·한정애·박민수·유승희·박남춘·김윤덕·김광진·박수현·임내현·김태년·신기남·이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35) 4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국회) 임시회 제1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확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오늘까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수요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총 22차에 걸친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치관계법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내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확정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정치 불신 요소를 제거하고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일년에 두 번 실시하던 재보궐선거의 횟수를 1회로 축소해서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망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관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거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 및 군인 등의 투표권 보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과 성숙된 정치문화의 정착에 기여한다는 일념으로 여야가 관련 제도의 개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한 국회의원 총 정수, 선거구 확정 기준,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우리 특별위원회가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제3의 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지만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거가 임박해서야 겨우 선거구를 확정했던 비정상적 행태를 정상으로 환원하고자 국회 외부에 설치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 기준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회의 정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치개혁특위 여야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향한 정치개혁특위의 발걸음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개혁은 우리 시대의 화두이며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섯 달간 국민권리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도 소홀함이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 여야가 하나 된 마음으로 사심 없이, 사욕 없이, 싸움 없이 여기까지 전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이어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원활한 정치개혁특위 운영과 생산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서 양당 간사를 비롯해서 소위 위원들은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을 보고받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이현재 · 이만우 · 김동완 · 고희선 · 전해철 · 정희수 · 박인숙 · 홍문표 · 유승민 의원 발의)(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조정식 · 이개호 · 주승용 · 박홍근 · 황주홍 · 심윤조 · 부좌현 · 박남춘 · 정청래 · 민홍철 · 강동원 · 김우남 · 유승희 의원 발의)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 · 김세연 · 안홍준 · 유기준 · 이현승 · 여상규 · 노철래 · 전하진 · 신성범 · 유재중 · 박인숙 · 유일호 · 주영순 · 김종훈 · 윤명희 · 김도읍 · 정의화 · 서용교 · 나성린 · 류지영 · 김정훈 · 김현숙 · 이재균 · 김재경 · 정갑윤 · 이채익 · 이현재 · 고희선 · 이진복 · 김성찬 · 현영희 · 박대출 의원 발의)(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배기운 · 김춘진 · 민홍철 · 전순옥 · 남인순 · 이찬열 · 배재정 · 김관영 · 강기정 · 박홍근 · 안규백 · 윤관석 · 유기홍 · 유은혜 · 신경민 · 최규성 · 김태년 · 한정애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24)(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김윤덕 · 백재현 · 박수현 · 이개호 · 정진후 · 정호준 · 김기준 · 우원식 · 유은혜 · 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91)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양승조 · 유승희 · 박남춘 · 김윤덕 · 김광진 · 박수현 · 임내현 · 김태년 · 신기남 · 이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59)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강기정 · 김윤덕 · 김기식 · 백재현 · 최재성 · 박광운 · 배재정 · 박영선 · 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65)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배기운 · 김춘진 · 민홍철 · 전순옥 · 남인순 · 이찬열 · 배재정 · 김관영 · 강기정 · 박홍근 · 안규백 · 윤관석 · 유기홍 · 김태년 · 유은혜 · 신경민 · 최규성 · 한정애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51)(계속)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안민석 · 심재권 · 김현미 · 홍종학 · 오제세 · 최민희 · 박광운 · 김성곤 · 이찬열 · 이종걸 · 부좌현 · 배재정 · 이개호 · 한명숙 · 최동익 · 서기호 · 추미애 · 도종환 · 유기홍 · 박민수 · 박남춘 · 이재균 의원 발의)(계속)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심윤조 · 김종태 · 류지영 · 송영근 · 이진복 · 이이재 · 서용교 · 김성곤 · 김동완 · 이학재 · 한선교 · 정병국 · 김광립 · 정수성 · 이주영 · 이한성 · 김태환 의원 발의)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서청원·이재오·김춘진·진선미·정청래·문정림·김을동·정갑윤·강석호·정병국·홍문표 의원 발의)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강동원·김경협·배재정·설훈·신경민·안규백·오영식·이찬열·이학영·최동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16)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민기·이윤석·한명숙·박지원·주승용·우원식·김성곤·임내현·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장하나·이에리사·정성호·유인태·홍종학·문병호·김성주·김광진·김민기·신경민·유성엽·윤후덕·강동원·전정희·김재윤·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양승조·한정애·박민수·유승희·박남춘·김윤덕·김광진·박수현·임내현·김태년·신기남·이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35)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19분)

○**위원장 이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태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김태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김태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김상희 의원, 김태년 의원, 진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15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 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재외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동시에, 기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며, 셋째 공관 외의 장소에 4만 명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전투표 시 사용하고 있는 행정망인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 및 보안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지역·성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등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게시물을 올릴 경우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동 조항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지 못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증명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되어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 및 언론인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보도 등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김태년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함께 참여해서 수고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의견 있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위원장 이병석 토론하시겠습니까?

○여상규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이미 지나와 버렸는데.

○여상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말씀하십시오.

○여상규 위원 공직선거법소위원회로서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에 관한 개정안인데요. 공직선거법 82조의6을 삭제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합의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이 조항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많이 참작되어서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도 별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개정안에 대한 소위 의결이 있는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의결 당시하고 지금 현재 전체회의 의결 그 사이에 상당한 큰 사정변경이 있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한 익명의 의견들이 많이 범람하는 경우에 상당히 선거가 혼탁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 결과 보고 내용도 보면 바로 동 조항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문헌 위원께서 심사소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문헌 심사소위 위원장 정문헌입니다.

지금 여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판결을 우리가 관심을 갖자, 그리고 첫 번째 회의가 끝나고 두 번째 논의할 때 결정을 내리고 그 이후에 현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지금 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는 익명이 허용되고 있다 선거기간에만 실명이 확인되게 되어 있는 법률이고 또 이것이 실명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 처벌이 익명을 쓴 개인이 아니라 언론사한테로 처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재의 위헌 판결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게 위헌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차원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차원에서 쓸데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그러면 여상규 위원님 의견을 속기록에 수록하는 것으로 해서, 정문헌 심사소 위원장님의 답변을 그렇게 참조해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여상규 위원** 저도 반드시 전체회의에서 이 조항에 대한 삭제, 소위 의결 내용을 번복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큰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소위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반드시 위헌인 규정만 개정할 것도 아니고 합헌이라도 개정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헌법심사 중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참작되어서 소위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병석**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백재현 위원** 백재현 위원입니다.

소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했고,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미는 그 법률이 법률로서 필요한 최소한을 갖추지 못한 정도는 아니어서 필요한 조건만 충족한다는 의미이지……

소위에서 논의할 만큼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위 멤버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결론 내린 대로 의결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고 또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또 발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공청회 실시와 관련해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께 위임을 해 주셨습니까. 다마는 공청회 실시계획에 대한 안내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석** 조금 이따 발언권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는 8월 24일 월요일에 권역별비례대표제도와 관련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진출인 선정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추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식 위원** 앞서 위원장님 말씀 뒤에 제가 말을 하려다가 안건 처리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구 확정기준 문제와 관련해서 현행 선거법에도 선거구 확정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선거구확정위원회가 선거구 확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미비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현역의원들의 선거구 기득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소위 현재 2 대 1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지역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확정기준을 변경할 것이냐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비례대표를 절대로 줄일 수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현재 의원정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현역의원들의 지역구 기득권을 늘려 주기 위해서 선거구 확정기준을 변경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재 선거구확정위원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데 정개특위가 해 줄 일은 현재의 2 대 1 결정을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하게 245석의 지역구 수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의 일부 자치구와 관련된 선거법상의

선거구 획정기준 일부를 보완해 주는 정도만으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충분히 독립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오후에 있을 공직선거법소위에서 이러한 전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충분히 고려하신다면 저는 오늘 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줄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선거법 개정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300명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비례대표를 단 한석도 줄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그 전제 위에서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 246을 선관위 안대로 더 줄일 수는 있으나 246을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더 증가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정도의 선거구 획정기준 부분만 오늘 오후에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별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석 그다음에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존경하는 김기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의 여러 가지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절대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일 수 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논거는 분명히 있으시겠습니까마는 그게 어쨌든 서로 협의에 상당한 장애물을 드리우는 그런 것은 아닌지요.

김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절대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확고한 당론입니까, 아니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직능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현재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갖추고 여의도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는데, 그러면 비례대표를 절대 줄일 수 없다는 그 확고한 논거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절대’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뭔가 여러 가지 협의로 이루어 내야 될 이런 사안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온당치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병석 잠깐만요.

오늘 현재의 이 토론은 여러분들 쌍방 간에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인 저를 보고 얘기하십시오. 상대방 발언에 대한 반박 발언, 반대 토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국회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병석 예, 그래요.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급기야 비례대표의 필요성 논쟁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례대표제도를 전문성의 관점 혹은 현재 계신, 여기 존경하는 민현주 위원님도 비례대표의원이지지만, 대변인 하면서 제가 자주 상대를 했습니다만 아주 유능하고 정말 새누리당의 정강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존경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전문성의 관점 또는 거기에 부합하게 비례대표의원들이 기능하고 활동했느냐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 헌법을 채택하고 있고 단원제이고 그리고 지역대표를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다수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선거구제에 단순다수대표제는 단 한 표만 이겨도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표 진 그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국민들의 민의가 완전히 폐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비례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우리 법률이 소위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법률에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하자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정치적 효과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영호남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이 있었고 그 지역감정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이 됐고, 따라서 영호남

에서 정말 꽃아 놓기만 하면 당선이 된다는 그러한 정치 후진국의 모습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조금 더 손질을 하고 보완을 하면 이 망국적인 지역감정,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토당토 안 하게 지금 전문성이 어떠하고, '전문성은 지역대표로도 충분히 보장이 된다'라는 이런 또 논리까지 비하되고, 급기야는 우리와 3년 이상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수십 명의, 오십네 분의 즉, 비례대표 국회의원님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매우 유능하시고 전문적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와당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론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서 권역별 비례대표라면 소위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에도 기여하는 제도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논의가 건설적으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기식 위원**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데 대해 1분만……

○**위원장 이병석** 그다음에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위원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김기식 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그 성격을 좀 분명히 해 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위원장 이병석** 아니,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지 마시고 토론으로 하시는데 짧게 하십시오, 같은 말씀이니까.

○**김기식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소위 헌법상 대의제 기관인 국회가 국민이 선택한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보정하는 장치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고,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문제나 선거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비례대표제의 문제가 아니고 현역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 문제, 선거구 기득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현재의 2대 1 결정이라고 하는 그 결정에 맞게 현재의 선거구 획정을 하면 되는데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소위 의원 숫자를,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려서라도 어떻게 획정 기준을 좀 숨통을 터줘…… 선거구 획정기준을 좀 변경해서 그것의 숨통을 터 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해서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김상훈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례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구의 선거구 획정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비례대표의 정수 문제와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비례대표의 가치를 전혀 부인했다거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의원들의 무슨 가치를 굉장히 심하게 훼손했다, 부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굉장히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의 정수 문제를 '절대'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현원을 유지한다면 그게 지역구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정수 문제로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문제는 건드리지 말고 지역구 선거구 획정 문제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논의의 여지가 지금 타이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의 가치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윤덕 위원** 이것 또 하루 종일 토론을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석**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정수 문제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병석**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논리적으로 비약하실 필요도 없고……

○**위원장 이병석**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이미 통과시킨 안건 심사 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곧 이어서 열리게 될,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논의될 여러 현안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회의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해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들이 곧 이어서 열리게 될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아마 참조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만들어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 해서 오늘 안건에 대한 처리를 전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기식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김희선	민현주
박대동	박범계	백재현	신정훈
여상규	유인태	이병석	정문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송병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김태년
-------------------	-----